한국기업의 사전 질의 답변 내용

제 1 질문: (KOTRA HCMC)

1. 생산공정 중에서 일부를 외부에서 임가공할 경우 면세

베트남 관세총국은 공문(4007/TXNK-CST)에서 업체가 수출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원재료의 수입관세 면세 또는 환급관련 유권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회사가 전체 아웃소싱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일부 공정단계를 아웃소싱을 거쳐 생산한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총국은 관련 시행령(Decree 134/2016/ND/-CP) 제 12 조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수입원재료 관세 면세에 관한 요건으로 "제조 가공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아웃소싱은 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모든 공정을 수행하기 보다는 공정별로 특화된 각각의 기업이 나누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이 아웃소싱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복잡한 공정을 한 기업이 모두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또는 일부 아웃소싱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출 후 정산(Liquidation) 절차에 따라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증명하여 관세 면세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에 따른 본격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기업들의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수출기업의 생산활동 뿐 아니라 직접 수출하지 않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베트남 가공산업 발전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시행령(Decree 134/2016/ND/-CP) 제 12 조에 따라 원재료 면세를 받은 기업이 다른 기업을 통하여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도 관세면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07/2016/QH13 호수출입세제 16 조 7 항, 정부의 2016.9.1 일자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에 따르면 수출용 완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의 제 12 조 2 항에서 규정돼있다.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회사가 전체 아웃소싱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일부 공정단계를 아웃소싱을 거쳐 생산한 경우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에서 규정되는 면세대상 확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아웃오싱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없다 따르면 이 공문에 따르면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상기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해관세총국은납세의무자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회사가 베트남에서 전체 아웃소싱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일부 공정단계를 아웃소싱을 거쳐 생산한 경우에도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있도록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를개정, 보완하기위해 재무부 조세정책국과 협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 EPE 기업 내수판매 한도 및 정산단위

EPE(Export Processing Enterpris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부품을 생산합니다.설립 당시에는 생산물품 전량 수출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삼성 등 베트남 내 기업에도 판매하기에 내수판매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베트남 내수 판매 비중이 40%까지 증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수 비중이 높아질 경우 EPE 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EPE 내수판매 제한 비중은 얼마입니까?

정산(Liquidation)에서 원재료는 면적으로, 제품은 개수로, 스크랩은 중량으로 관리 단위가 서로 다릅니다. 단위는 다르지만 단위 간에 상호 변환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단위로 정산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u>답변:</u>

* EPE 내수판매 제한 비중 관련

- 공업단지와 수출가공단지 관리를 규정하는 정부의 2018.5.22 일자 시행령 제 82/2018/NĐ-CP 호의 제 30 조 5 항에 따르면 수출·가공 기업은 투자 및 무역 관련 법에 따라 기업의 자산과 물품을 베트남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음. 베트남 시장에서 매각/판매 시, 수출입 물품 관리 정책은 적용되지 않음. 단, 원래 특별 관리 조건/기준이나 검사가 요구되지만 수입 시 이를 시행하지 않은 물품은 허용되지 않음. 또한 라이선스로 관리되는 물품은 수입 허가권을 부여하는 관계 당국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2015.3.25 일자 시행 규칙 제 38/2015/TT-BTC 호의제 75 조 2 항(2018.4.20 일자 시행 규칙 제 39/2018/TT-BTC 호의 제 1 조 51 항에서 개정, 보완됨)에서 "수출 가공 기업과 로컬 기업 간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수출 가공 기업과 로컬 기업이 동 시행 규칙의 제 86 조에서 규정된 해당 유형에 따라 수출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적 문서에서 "EPC 내수 판매비 중"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가공 기업이 물품을 베트남 시장에 판매할 경우 수출 가공 기업과 베트남 로컬 업체가 규정에 따라 수출입 절차를 이행하고 물품 관리 정책과 세무 정책(있을 경우)을 이행해야 한다.

* 수입 원재료, 물자, 물품 정산보고서 수립 관련 2015.3.25 일자 시행규칙 제 38/2015/TT-BTC 호의 제 60 조 (2018.4.20 일자 시행규칙 제 39/2018/TT-BTC 호의 제 1 조 제 39 항에서 개정, 보완됨)에서 수입 원자재, 수출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규정한다.

- 개인과 조직이 생산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하고 원재료 수입 시 및 제품 수출 시 세관신고서상 등록한 원자재, 제품 개별 코드에 따라 입고-출고-재고 방식으로 수입 원재료, 수출 제품 정산보고서를 수립한다.

  개인과 조직이 원재료, 물자 수입 시와 제품 수출 시 세관신고서상 등록한 원재료, 물자, 제품 코드와 다른 코드를 사용할 경우 기존 등록한 코드와 새로 사용하는 코드를 대조할 수 있는 표를 수립해야 하며 세관당국이 검사 시 또는 제출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 개인과 조직이 수출품 생산-가공을 위해 수입한 원재료 입고-출고-재고 정산보고서를 동 시행규칙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 제 25 호 서식 또는 부록 V 의 15/BCQT-NVL/GSQL 서식에 따라 수립하고 제출한다. 수출품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로 생산된 완제품 입고-출고-재고 정산보고서를 동 시행규칙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 의 제 26 호 서식 또는 부록 V 의 제 15a/BCQTSP-GSQL 호 서식에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 수립한다.

기업이 상기 규정을 연구하고 수입 원재료, 수출품 정산보고서를 일관되게 수립하여주기를 바랍니다.

3. 수출물품에 부착되는 외국발행 바코드

최근 세관당국의 관세조사에서 봉제 임가공기업이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임가공물품에 부착되는 바코드까지도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관당국의 관세조사에서 임가공기업은 베트남 표준계량품질관리국('품질관리국')에 다음 절차에 따라 바코드를 사전등록하도록 전달받았습니다.

① 외국에서 발행된 바코드관련 정보를 베트남 품질관리국에 제출

② 품질관리국은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여 외국 바코드의 상품부착 승인

베트남 바코드 규정에서는 "외국에서 발급한 바코드는 품질관리국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바코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출물품에 부착되는 바코드는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지 않습니다. 제조가공 후 수입국가 유통에 활용하기 위해 부착됩니다. 즉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바코드 관리할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임가공업체는 바이어 요청한 바코드를 부착만 합니다. 바코드 등록하기 위한 관련 정보도 없습니다.

수출물품에 부착되는 바코드는 베트남에 유통될 물품의 바코드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 유통될 물품이라면 바코드 정보를 베트남 품질관리국에 등록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바코드를 수출될 물품까지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임가공업체에 큰 부담이 됩니다.

베트남에서 유통되지 않고 수출될 물품의 바코드에 대하여 사전등록이 필요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업의 상기 문의 내용은 재무부와 관세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관련 관리기관에 직접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컨테이너 처리비용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입 (Cục Thuế XNK)

베트남 관세총국 지침에 따라 도착항에서 발생되는 부대비용인 DO(화물지시인도서 서류발급 비용), CIC(컨테이너 임벨런스 비용), CCC(컨테이너 청소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 가격에 추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관부가세가 증가됩니다.

수입물품은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가격의 가산요소로 해상운임까지만 포함합니다. 수입항에 도착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동 비용이 추가되면 수입신고에서 부가세가 한번 청구되고, 동 비용을 물류업체가 청구할 때도 부가세가 두 번째 청구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비용이지만 부가세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DO, CIC, CCC 비용에 대한 처리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물품 운송비용과 관련비용: 2015.03.25 일자 시행규칙 제 39/2015/TT-BTC 호의 제 13 조 2 항 g 점과 1 항에 따르면 처음 수입포구까지 물품 운송비와 관련된 다른 비용, 또는 처음 수입포구까지 발생한 운송비용인데 시행규칙 제 39/2015/TT-BTC 호의 제 13 호 1 항에서 규정된 조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수입품 수입세 가치에 가하지 않다.

해상 및 항공 운송의 처음수입포구는 2018.4.20 일자 시행령 제 59/2018/NĐ-CP 호의 제 1 조 8 항에서 규정된 선하증권에 명시된 하역항이다.

이에 따라 처음 수입포구에 하역된 후 발생한 DO 비용, CIC 비용, CCC 비용이 수입품 수입세 가치에 가하지 않다. (관세청은 이를 지시하는 2018.3.8 일자 공문 제 1237/TCHQ-TXNK 호를 각성, 시 세관국에 발송한 바임)

5. 면세받은 기계·설비 매각절차

한국본사에서 100%출자하여 베트남에 임가공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공장 설립 당시 기계설비에 관세를 면세 받아 수입하였습니다. 최근 공장시설을 업그레이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계·설비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기계·설비가 남게 되었고, 베트남 내에서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입 당시 면세 받은 기계·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청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합니까?

베트남 내에서 판매되지 않아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받은 기계·설비를 수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청산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수입 시 관세가 면세된 기계·설비 매각 절차**

재무부의 2015.3.25 일자 시행규칙 제 38/2015/TT-BTC 호의 제 21 점을 개정, 보완한 재무부의 2018.4.20 일자 시행규칙 제 39/2018/TT-BTC 호의 제 1 조 10 항에 따르면

"1. 이행원칙

d)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내수 판매로 이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 벌금(있을경우)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2. 세관신고자의 의무

…

b) 재생산 방식으로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동 조항의 a 점의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되지만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수입 시 관세가 면세된 기계·설비의 사용목적을 변경할 경우 상기 규정을 참고하고 이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사용목적이변경된설비, 기계에대한세관절차

시행령 제 08/2015/NĐ-CP 호의 제 25 조 5 항 2018.4.20 일자 시행령 제 59/2018/NĐ-CP 호의 제 1 조 12 항에서 개정, 보완됨)에 따르면 "수출관세, 수입관세,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환경보호세 과세대상이 아닌 수출입물품 또는 할당관세에 따라 면세되거나 세율이 적용된 물품이 방출·통관 완료 후 비과세대상 또는 면세 목적이 변경된 경우, 할당관세에 따라 세율 적용된 경우,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 설비, 기계, 임시수입 재수출 물품이 방출· 통관 완료 후 사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내수 판매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세관 신고서를 신청해야 한다. 최초의 세관신고서 신청 시점에서의 기존 수출, 수입물품 관리 정책, 세무정책을 충분히 이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세관 신고서 등록 시 현행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상기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면세목적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세관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업이 최초 세관신고서 신청 시점에서의 기존 수출, 수입물품 관리정책, 세무정책을 충분히 이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세관신고서 도록 시점의 현행 정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이 상기 규정을 연구하고 이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6. 수입물품 인허가, 검사, 검역

베트남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품을 베트남에 수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수입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마다 인허가 사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식품은 식품안전법에 따른 검역, 전자제품은 에너지효율 등급 등 물품마다 다양한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수입업체가 베트남 수입요건을 사전에 준비한다면 베트남 수입통관 절차 진행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품별 수입요건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자료나 기관이 있습니까?

답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출입 물품 통관 시 2014 년 관세법과 2007 년 상품 및 품질법, 2010 년 식품안전법, 2015 년 수의법, 2013 년 식물보호 및 검역법 등 각분야별 법에서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기업이 통관 시 인허가(수출입물품인 경우 인허가 있어야함), 검역에 관한 전문적인 검사결과에 대한 서류(식물, 동물, 보건), 문화, 식품안전, 품질검사, 합격증명서 등이 문서를 세관기관에 제출하기도 한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 이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업이 물품 수입·수출 시 사전에 베트남의 분야별 전문적인 검사 및 관리 정책에 관한 법적문서를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관세총국의 포털에서 이들 법적문서를 참고할수있다 (VNACCS/VCIS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법적문서와 인허가 분류 코드)

7. 투자허가서(IRC) 상 취급 HS 코드 명기

최근 상법의 개정으로 투자허가서에 일부 물품(윤활류 등)을 제외하고 수출입 및 유통 물품 HS 코드를 명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부자재를 수입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수출할 경우 즉, 새로운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세관에서 해당물품의 취급이 가능하도록 HS 코드가 명기되어 있는 투자허가서(IRC)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하지만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인 베트남 투자청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IRC 에 HS 코드 명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관에서는 IRC 에 HS 코드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IRC 발급기관인 투자청에서는 HS 코드를 명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수출입 관련 세관에 제출하는 투자허가서에 HS 코드가 명시되어야 합니까?

답변:

- 투자허가서상의 내용을 규정하는 2014.11.26 일자 투자법 제 67/2014/QH13 호의 제 39 조에 따르면 투자허가서상 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활동이 가능한 물품의 품목 HS 코드를 개별적으로 기재해야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법인의 물품 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활동에 관한 무역법, 무역관리법을 세부 규정하는 정부의 2018.1.15 일자 시행령 제 09/2018/NĐ-CP 호의 제 5 조, 6 조, 11 조에서 다음과 함께 규정한다.

  "제 5 조.영업허가와 소매매장 설립허가 발급

  1. 외국인 투자지분을 소유하는 경제조직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도록 영업허가를 발급해준다.

a) 물품유통, 소매권을 실행한다. 동시행령의 제 9 조 4 항 c 점에서 규정된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b) 동시행령의 제 9 조 4 항 b 점에서 규정된 물품 수입, 유통, 도매권을 실행한다.

c) 동사행령의 제 9 조 4 항 c 점에서 규정된 물품 유통소매권을 실행한다.

제 6 조. 영업허가발급필요없는경우

1. 동 시행령의 제 5 조 1 항에서 규정된 영업허가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활동 외에는 외국인 투자지분을 소유하는 경제조직과 투자법의 제 23 조 1 항 b,c 점에서 규정된 경제조직이 투자법, 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문서상물품 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등록한 후 동 시행령의 제 3 조 1 항에서 규정된 해당 활동들을 실행할 권한이 있다.

제 11 조. 영업허가 내용 및 영업 기간

1. 영업허가 내용 (동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의 11 호 서식)

a) 기업의 명칭, 사업자 번호, 본사의 주소, 법적 대표자

b) 소유주, 자본 출자 주주, 창립 주주

c) 유통 물품;

d) 물품 거래와 직접 관련된 활동들

đ) 기타 내용…".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을 소유하는 경제조직이 시행령 제 09/2018/NĐ-CP 호의 제 5 조 1 항에서 규정된 활동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를 발급해 줍니다. 규정에 의해 영업허가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 투자지분을 소유하는 경제조직이 물품 거래 활동 및 이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투자법과 기업법(제 6 조 1 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상 등록한 후 그 활동을 실행할 수 있다.

상기 시행령 제 09/2018/NĐ-CP 호의 제 11 조 1 항에서 규정된 영업허가 내용상 수출입 및 유통 물품 HS 코드를 명기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8. 불복절차 (Vụ Thanh tra)

한국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순서로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관당국의 행정처분(과세, 추징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베트남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납세자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세부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베트남의 법률에 따라 행정결정 또는 행정적 행위가 불법이거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직접 침해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이나 조직은 행정 결정을 내린 기관에 불복을 제기하거나 법원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복 절차와 불복 처리는 정부감찰 2014.10.31일자 시행규칙 제07/2014/TT-TTCP호, 2011년 소송법, 2013.10.31일자 시행규칙 제07/2013/TT-TTCP호, 시행규칙 제07/2013/TT-TTCP호를 개정, 보완한 2016.10.20일자 시행규칙 제02/2016/TT-TTCP호에 의해 진행된다.

행정 소송 절차는 2015년 행정소송법과 동 법령 이행 안내 문서에서 규정된다.

제 2 질문: 세관 통관비에 대한 과세 관련

저희 회사는 물품 통관시에 Tien Son 세관에 통관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음. 그러나 세관측에서 어떠한 증빙이나 세금계산서 처리를 안 해주어 연말 세무감사시에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음.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통관비에 대해 당사에서는 물류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물류업체에 발생된 세금 2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으로 현금을 재회수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세무감사 시에는 물류업체를 통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대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함.

그러나 통관 후 심사시에 세관 감사원들이 통관비를 대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세무감사와는 별도로 해당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물류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시 할 경우 세관 감사원들은 이에 대해 정식으로 이루어진 계산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인정을 하지 않으며, 별도의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함.

따라서 세관에서는 통관비에 대해 정식 영수증을 발급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처리한 세금계산서를 인정해 주든지 해주시기 바람.

답변:

시행규칙 제 274/2016/TT-BTC 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세관 신고서 등록비
- 세관 검사, 감시비 또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요청이 있을 시 통관 보류 비용
- 물품 경유 비용
- 운송수단의육로 경유비용 (자동차, 견인차...)

- 운송수단의 수로 경유비용 (배, 견인차량, 카누, 바지선...)

귀사에서 문의한 세관 통관비 관련, 이들 비용들이 재무부의 시행규칙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귀사가 문의한 비용이 세관신고서 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관 통관비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부의 시행규칙 제 274/2016/TT-BTC 호의 제 5 조 4 항, 2015.11.17 일자 시행규칙 제 184/2015/TT-BTC 호의 제 16 조 2 항에 따르면 세관 신고자/납세의무자는 세금,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현금 또는 현금 이외의 지불 방식 (이체)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현금으로 세관 통관비용을 납부한 경우 세관당국이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재무부의 2016.11.15 일자 시행규칙 제 303/2016/TT-BTC 호에서 규정됨)

세관 통관비 납부 시 정식 계산서 발급에 관한 귀사 요청과 관련, Tien Son 세관지국 회계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동 세관지국에서 세금과 비용 징수를 100% 전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금 징수 부서가 없습니다.

제 3 질문: 수입 원산지 증명서 제출 기한 연장

베트남과 다른 국가의 FTA 협정상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은 1 년임. 그러나 베트남 정부에서는 VK FTA 를 제외하고는 30 일 이내에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협정에 근거하여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라 하더라도 제출기한 경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요청) 저희 회사는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내 EPE 기업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수취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38/2018/TT-BTC Article 7 Time of submitting proof of origin 에서는 VK FTA 는 1 년, EAV 는 수입신고 시점과 동시, 다른 FTA 는 제출기간을 30 일로 규정하고 있음. 중국, 태국에서 수입중인 자재 중

원산지증명서를 30 일 경과하여 수취한 것은 사용할 수 없어 수입 원산지증명서 제출 가능한 기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

답변:

수출 물품,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재무부의 2018.4.20 일자 시행규칙 제 38/2018/TT-BTC 호의 제 7 조에서 FTA 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C/O 제출 시점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세관 절차 진행 시점에 기업이 C/O 가 아직 없는 경우 30 일 이내 추가 제출할 수 있다 (EAV 양식과 VK 양식 C/O 제외). 귀사가 시행규칙 제 38/2018/TT-BTC 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제 4 질문: 내수판매용 자재의 관세환급 방안 EPE 기업과 거래 시 관세 환급 여부

* 관세는 소비세 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수출자가 수입한 수입자재가 아닌 이상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 한국은 최종 수출자가 아닌 국내 생산자가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 환급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어 있음.

* EPE 기업이 아닌 경우 수입된 사급자재를 내수 판매 후 반제품 구매 생산한, 완제품 수출 시 수입된 사급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 이 불가능함.

* 개정법률에서 가 EPE 전환 시 로컬 협력사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요청)

* 현행 EPE 가 아닌 기업은 수입자재를 내수판매 하는 경우 국내 판매용 자재 수입으로 (D type)으로 보아 관세를 납부 해야 함.

* 수입 원자재를 사급 거래하여 베트남 로컬 업체가 반제품 생산하여 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이 거래 또한 내수 판매 거래이기 때문에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님.

이후 공급 받은 반제품을 기반으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재 법 제도 하에서는 수입된 사급 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SPECIFIC PROVISIONS APPLICABLE FOR EPEs (amending and supplementing from Article 74 to Article 79, Circular 38/2015/TT-BTC)의거하면 EPE 기업과 NON- EPE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수출입신고가 발생하므로 사급 수입자재에 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됨.

답변:

수출입관세법 제 107/2016/QH13 호의 제 4 조 1 항에 의하면 *비관세 구역이란* 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확정된 지리적 경계를 가지는 베트남 영토에서 위치하며, 외부 지역에서 단단한 울타리로 분리되고 수출품, 수입품, 입국자, 출국자에 대해 세관 당국 및 기타 관련 기관의 검사, 감독, 세관 검사를 위한 조건을 보장하는 경제 단지를 말한다. 비관세 구역과 외부 구역 사이에서 상품의 거래, 교환의 관계는 수출, 수입 관계이다.

수출입관세법 제 107/2016/QH13 호의제 19 조 1 항 c 점에 의하면 납세자가 수입세를 납부했지만 재수출 해야할 상품이 수입세를 환급받고 수출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입관세법 제 107/2016/QH13 호의제 19 조 1 항 d 점에 의하면 납세자가 생산, 경영을 위해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지만 수출품을 생산하기 투입했고 상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2016.9.1 일자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의 제 34 조 1 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수입세를 납부했지만 재수출해야 할 상품이 수입세를 환급받고 수출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의 2016.9.1 일자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의 제 36 조 1 항에 의하면납세자가 생산, 경영을 위해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지만 수출품을 생산하기 투입했고 상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물품인지 확인하는 기준이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의 제 36 조 3 항에서 규정된다.

상기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수출품을 생산하기 물품을 수입하고 생산에 투입했고 상품을 다른 기업에 판매한 경우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에서 규정된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수입세를 납부했지만 수입한 물품을 수출가공업체에 판매한 경우 수출입관세법 제 107/2016/QH13 호의 제 4 조 1 항에서 규정되는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수입세를 환급받고 수출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5 질문:

1. **Circular 38/2018/TT-BTC 7 조 HS Code 변경에 따른 C/O 추가제출 규정 관련 세부지침 요청(KOTRA HANOI)**

   a) 최초 수입신고 시 MFN 세율을 적용한 품목에 대해 HS Code 변경이 발생한 경우, 유효한 기간(validity period) 내에 추가적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효한 기간(validity period)이 정확하게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지?

   b) 수입신고 시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 와 변경된 HS Code 의 PSR(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HS Code 변경이 있더라도 신고신고 시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수입신고 시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가 효력이 없다면, 변경된 HS Code 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규정된 적용기한이 있는지?

c) 수입신고 시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 와 변경된 HS Code 의 PSR(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경우, 변경된 HS Code 로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 규정된 적용기한이 있는지?

d)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HS Code 가 변경되어 새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이 때 원산지증명서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예를 들어, AK C/O 에서 VK C/O 로 변경)

답변:

이들 협정들의 원산지 원칙을 규정하는 자유무역협정과 국내 법적 문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산지 발급 시점부터 1 년입니다. 귀사가 이 규정을 연구하고 이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 38/2018/TT-BTC 호의 제 7 조 1 항 c 점의 규정은 기업이 세관신고서상 신고한, 통관된 물품의 코드가 변경된 경우(자체 발견 또는 통관 후 검사로 발견) 특혜관세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이 수입 신고 시 C/O 를 제출했지만 MFN 세율을 신고한 경우에는 세관당국이 FTA 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C/O 를 제출하는 경우와 같이 C/O 를 검사 진행합니다. 신고서상 기재된 HS 코드가 C/O 상 기재된 HS 코드와 상이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38/2018/TT-BTC 호의 제 15 조 6 항 h 점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기업이 제출한 C/O 에 대해, 세관당국이 검사를 진행했는 경우 기업이 다른 원산지증명서 종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Circular 38/2018/TT-BTC 7 조 b)항에 의해. 추가적으로 C/O 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입신고 시에 C/O 의 추가제출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으나, 통관이 완료된 후 C/O 의 추가제출을 위해 수입신고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만일 가능하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b)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이러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재무부와 관세총국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상기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C/O 의 추가제출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C/O 를 추가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Circular 38/2018/TT-BTC 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와 한-베 FTA 를 적용하고자 할 때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본 제출에 따른 업체들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큽니다. 한국은 FTA 사후적용 시에도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재무부와 관세총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각 협정과 국내 법적문서에서 규정됩니다. 귀사가 규정을 준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4. Decree 134/2016/ND-CP 12 조 a)항과 관련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 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일부 공정이 외주가공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면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에 따른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Decree 134/2016/ND-CP 가 2016 년 9 월부터 유효한 규정이기 때문에 2016 년 9 월부터 해당 규정이 개정되는 날까지 외주가공에 의해 생산된 물품과 관련하여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Decree 134/2016/ND-CP 12 조가 유효한 기간에 대해 업체들은 외주가공에 따른 부담을 여전히 가질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재무부과 관세총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107/2016/QH13 호수출입세제 16 조 7 항, 정부의 2016.9.1 일자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에 따르면 수출용 완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의 제 12 조 2 항에서 규정돼있다.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회사가 전체 아웃소싱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일부 공정단계를 아웃소싱을 거쳐 생산한 경우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에서 규정되는 면세대상 확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아웃오싱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없다 따르면 이 공문에 따르면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상기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해관세총국은납세의무자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회사가 베트남에서 전체 아웃소싱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일부 공정단계를 아웃소싱을 거쳐 생산한 경우에도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있도록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를 개정, 보완하기 위해 재무부 조세 정책국과 협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 베트남에서는 해외계약자와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임가공업체가 관세 면제 대신 FTA 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임가공업체의 FTA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임가공업체가 관세 면제 대신 FTA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하나의 임가공계약상 명시된 다양한 원재료에 대해 일부는 관세 면세를 적용하고, 일부는 FTA 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수출입관세법의 제 16 조 6 항에 의하면 "수출품을 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소모품 및 부품; 가공 제품에 부착하기 위해 수입되는 완제품; 가공 수출 제품"이 수출세, 수입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외국인 파트너에게 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형태로 신고서를 등록한 경우 면세받을 수 있고 규정에 맞게 외국인 파트너에게 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정책, 세무정책을 이행해주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영업을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형태로 신고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수입품이 특혜 수입관세율표를 발행한 시행령들에서 규정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면 특혜 수입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2017.12.27 일자 시행령 제 156/2017/NĐ-CP 호에 따른 ATIG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입품이 동 시행령의 제 4 조에서 규정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 4 조: 특혜 수입관세율 적용 조건

ATIGA 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품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동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특혜 수입관세율표에 속한다

2. 아세안상품무역협정의 회원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것

a) 브루나이;

b) 캄보디아;

c) 인도네시아;

d) 라오스

đ) 말레이시아;

e) 미얀마;

g) 필리핀;

h) 싱가포르;

i) 태국

k) 베트남 (비관세구역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상품).

3. 산업무역부가 규정하는 동 시행영의 제 4 조 2 항에 의한 수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운송된 것

4. 아세안상품무역협정의 원산지에 관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D 서식 C/O 가 있는 것

6. Circular 38/2015/TT-BTC 86 조 1 항 및 2 항에 의해 "Indirect Export"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며 관련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조항에 따라 "Indirect Export"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Indirect Export"를 일반적인 수출로 이해하여 Decree 134/2016/ND-CP 10 조 및 12 조와 같은 관세 면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적문서 발행법 제 80/2015/QH13 호의 제 156 조 1 항, 2 항에 의하면 법적문서가 효력이 발생 중 발생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여러 법적문서가 같은 문제에 대해 상이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높은 문서가 적용됩니다.

수출입관세법 제 107/2016/QH13 호의 제 2 조 3 항에 의하면 현장 수출품, 수입품이 과세대상입니다.

수출입관세법 제 107/2016/QH13 호의 제 16 조 7 항에 의하면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소모품, 부품이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5.6.14 일자 무역법 제 36/2005/QH11 호의 제 28 조 1 항, 2 항에 의하면 물품 수출이란 물품을 베트남 영토 밖으로 반출하거나 법 규정에 따라 전용 관세구역으로 간주되는 베트남 영통에 위치한 특별구역에 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 수입이란 해외에서 베트남 영토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법 규정에 따라 전용 세관 구역으로 간주되는 베트남 영토 내 위치한 특별 구역에서 베트남 영토로 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6.9.1 일자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의 제 12 조 1 항에 의하면 수출품을 생산하기 뒤해 수입되는 원재료, 설비, 부품, 반성품, 완성품이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물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의 제 12 조 2 항에서 규정됩니다.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2017.9.1 일부터 수출품 생산하기 위해 수입되는 원재료, 설비, 부품이 현장 수출입을 위해 제품을 상산하기 위한 경우에는 면세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총국은 현장 수출입에 관한 세제를 안내하는 공문 제 4532/TCHQ-TXNK 호를 발행한 바임).

7. Circular 39/2018/TT-BTC 76 조 1 항은 EP 기업과 임가공업체간 거래(EP 기업에 의해 내수기업이 임가공계약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통관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관세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래와 관련된 관세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련 수입세 및 수출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1> EP기업에 의해 원재료가 공급되는 경우

1) EP기업이 내수기업에 원재료를 전달할 때

2) 내수기업이 임가공 후 EP기업에 임가공된 물품을 전달할 때

2> 원재료가 임가공을 위해 내수업체에 의해 구매되는 경우

1) 내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원재료를 구매할 때

- 통관절차 및 수입세 납부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혹시 필요한지 확인을 요청함

2) 내수기업이 임가공 후 EP기업에 임가공된 물품을 전달할 때

3> 원재료가 임가공을 위해 내수업체에 의해 수입되는 경우

1)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내수기업이 임가공 후 EP기업에 임가공된 물품을 전달할 때

답변:

수출입관세법 제 107/2016/QH13 호의 제 16 조 6 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수출품을 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소모품 및 부품; 가공 제품에 부착하기 위해 수입되는 완제품; 가공 수출 제품.

수출세가 있는 국내 원자재, 소모품으로 생산되는 가공 수출 제품은 수출 제품의 구성에 해당하는 국내 원자재, 소모품의 가치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지 않다".

기업이 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 물자가 수입관세를 면제받습니다. 가공된 수출품이 수출관세를 면제받습니다. 수출세가 있는 국내 원자재, 소모품으로

생산되는 가공 수출 제품은 수출 제품의 구성에 해당하는 국내 원자재, 소모품의 가치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지 않다".

내수기업이 임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물자가 수입관세를 면제받습니다. 사공된 수출품이 수출면세를 받습니다. 수출세가 있는 국내 원자재, 소모품으로 생산되는 가공 수출 제품은 수출 제품의 구성에 해당하는 국내 원자재, 소모품의 가치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지 않다.

수출 신고 시 내수기업이 가공 제품을 같은 행에 기재하고, 수출품의 구성에 해당하는 같은 품목, 원재료, 설비를 다음 행에 기재합니다. "별도 관리 번호"는 ""NVLCTXK"로 기재하고 수출 신고서상의 원재료, 설비의 수출관세와 기타 세금이 시행규칙 제 38/2015/TT-BTC 호의 제 61 조(시행규칙 제 39/2018/TT-BTC 호의 제 1 조 40 항에서 개정, 보완됨)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기업이 상기 규정을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애로사항이 발생 시 신고서 등록한 관할지역 세관당국에 문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제 6 질문: Glass 원판 수입관세 관련 건의 (SR Hanoi Daedong)

저희는 베트남 삼성전자에 카메라 커버 글라스 윈도우를 공급하는 1 차 협력사입니다. 기존에는 글라스 윈도우의 원자재 가공을 한국에서 가공하여 베트남에서 증착(코팅) 및 후가공을 하는 프로세스로 납품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가공된 글라스를 수입 하여 모바일 부품으로 인정받아 0% 관세 HS code 8517.70.21 를 적용 수입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글라스 가공라인을 베트남 공장에 내제화 하여 원판 글라스 가공부터 전체 공정을 베트남에 내제화 하고자 라인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에 주요 원자재인 원판 글라스의 수입 관세를 하노이 해관 총국에 문의 하였더니 글라스의 경우 최근 해관 상부의 지시가 있어 무조건

40% HS code 7005.29.20 를 적용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HS code 책자에 분명히 광학 유리는 HS code 7006.00.10 으로 5% 관세로 명기 되어 있으나 묵인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청)

저희가 사용하는 글라스 원판의 경우 미국 Corning 社에서만 제작되는 투과율 90% 이상의 알루미나 광학글라스로 베트남에서는 해당글라스가 생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지정된 글라스로 타사 제품으로 대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수입하여 생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관세를 무조건 40%를 적용하겠다고 하니 애로가 큽니다.

베트남에 가공라인부터 전체 공정을 구축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나, 현상황 같으면 수출 외에 내수 판매가 불가하여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하노이 해관 총국에서는 무조건 40% 관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디 해결 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드립니다.

답변:

1. 글라스 원판 제품의 수입관세: 기업이 기업명, 수이ㅂ신고서 번호, 수입신고서를 등록한 세관지국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관세총국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2. HS code 70.06 품목 분석 관련: 기업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기업이 투과율 90% 이상의 알루미나 광학글라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상기 정보는 귀사가 수입한 글라스가 어떤 종류인지, 어느정도 가공되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동 제품이 HS code 70.06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관세총국에서 HS code 70.06 품목 분류를 안내하는 공문 제 5498/TCHQ-TXNK 호를 2017.8.21 일자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중 HS2012

70.06 품명의 상세설명에서 나열된 가공 수준 들 중 하나를 만조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귀사가 문의한 제품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70.05 품목에 속한지 70.06 품목에 속한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3. 기업이 제품 HS 코드를 사전 분류할 필요가 있으면 재무부의 2018.4.20 일자 시행규칙 제 39/2018/TT-BTC 호의 제 1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분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7 질문: 아웃소싱으로 수출품 생산시 관세 면세 및 환급에 관련된 사항 (타이응웬 코참)

한국기업들은 한베 협력업체들에게 아웃소싱 후 제품을 납품받고 이를 완제품화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음. 가장 일반적인 수출 방식임. 그러나 최근 GDC(General Department of Customs)에서 발표한 유권해석(4007/TXNK-CST)에 따르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회사가 전체 아웃소싱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일부 공정단계를 아웃소싱을 줘서 생산한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음.

지금까지는 전체 또는 일부 아웃소싱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출 후 정산(Liquidation) 절차에 따라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증명하여 관세 면세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에 따른 본격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기업들의 큰 타격이 예상됨.

대부분의 기업이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복잡한 공정을 한개 기업이 모두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수출기업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아웃소싱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도 면세에는 문제가 없음"을 명문화 하여 주시기 바람. 이를 통해, 베트남 소재부품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교역을 늘려 베트남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임.

답변:

107/2016/QH13 호수출입세제 16 조 7 항, 정부의 2016.9.1 일자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에 따르면 수출용 완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의 제 12 조 2 항에서 규정돼있다.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회사가 전체 아웃소싱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일부 공정단계를 아웃소싱을 거쳐 생산한 경우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에서 규정되는 면세대상 확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아웃오싱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없다 따르면 이 공문에 따르면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상기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해관세총국은납세의무자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회사가 베트남에서 전체 아웃소싱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일부 공정단계를 아웃소싱을 거쳐 생산한 경우에도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있도록 시행령 제 134/2016/NĐ-CP 호를개정, 보완하기위해 재무부 조세정책국과 협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